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심기보 의원 등 8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9년 4월 9일
- 회부일자 : 2019년 4월 11일

3. 제안사유

- 상위법인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등의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인 현행 시각장애인 4급을 삭제하고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정도를 반영함(안 제2조제1항).
1. 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초과 0.1 이하인 사람
 2.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
- 나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대체취득 감면 요건 중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규정을 삭제함(안 제2조).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영지)

가. 제출배경

-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(2019.7.1) 및 「지방세 특례제한법」 개정(시행일 2019. 1. 1.)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상위법인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대상 규정을 변경함.
 - 기존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취득세 면제 대상은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.
 -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으로 2019년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
 - 용어 중 “장애등급” 을 “장애정도” 로 변경하고, <참고1 참조>
 - 취득세 면제 대상은 기존 시각장애4급에 해당하는 장애정도를 직접 기술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것으로 타당함. <참고2 참조>

조례 현행	조례 개정안
제2조(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) ① ~ <u>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</u> 이 ~	제2조(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) ~ <u>시각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 이 ~ 1. 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초과 0.1 이하인 사람 2.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

<참고1> 장애등급제 개편내용

- **현행 서비스기준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, 장애정도로 변경**
 ⇒ **‘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** 과 **‘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’**으로 구분
 (기존 1~3급) (기존 4~6급)

<참고2> 시각장애인 장애정도 개편내용

현행		개정 후	
제1급	좋은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인 사람	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	1. 좋은 눈의 시력(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, 굴절이상 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. 이하 같다)이 0.06 이하인 사람 2.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
제2급	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		
제3급	1. 좋은 눈 시력이 0.06 이하인 사람 2.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	
제4급	1. 좋은 눈의 시력이 0.1 이하인 사람 2.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1. 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인 사람 2.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.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% 이상 감소한 사람 4. 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인 사람
제5급	1. 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인 사람 2.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% 이상 감소한 사람		
제6급	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인 사람		

○ 안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상위법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자동차 대체취득 규정을 정비하고, 약어표기를 사용하여 조문 구성의 경제성을 도모하였음.

- 또한,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대체취득 시 면제 요건 중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말소 또는 이전등록을 하고 다시 취득해야 한다는 기존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삭제한 것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
※“2019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”(행안부) : **참고3 참조**

<참고3> 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규정 정비

※ 자료출처 : “2019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”,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pp.78-79.

3 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규정 정비(제8조, 제10조의2, 제12조의2)

1 개정개요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대체취득 자동차 감면 요건 <input type="radio"/> (장애인, 다자녀) 법·영으로 규정 <input type="radio"/> (유공자) 시행령으로 규정	<input type="checkbox"/> 법·시행령에 혼재된 규정 정비 <input type="radio"/> (장애인, 다자녀, 유공자) - 법 : 대체취득 감면 요건 위임 - 영 : 세부적 감면 요건 규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양육자 자동차 대체취득 감면 요건 ①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②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고 신규 자동차를 다시 취득할 것(신차 취득 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) ③ 종전 자동차를 공동명의자 외의 자에 이전 할 것(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만 해당) ※ 해당 규정은 '16년 말 개정되었으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함에 따라 - 2019.1.1. 부터 시행됨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체취득 감면 요건 명확화 ① 삭제 ②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고 신규 자동차를 다시 취득할 것(신차 취득 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) ③ 종전 자동차를 공동명의자 외의 자에 이전 할 것(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만 해당)

□ 개정내용

- 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 감면 규정별로 대체취득 자동차 감면요건 등을 시행령에 위임
- 조문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통일성 있게 체계 정비

구분	현행			개정
	장애인(법§17)	다자녀(§22의2)	유공자(§29)	
대체취득 위임규정	○	○	×	○(법)
대체취득 정의	법	법	시행령	시행령
취득 후 이전·말소	법	법	시행령	시행령
1년 경과요건	시행령	법	시행령	삭제
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대체취득 감면 시 감면 받은 종전 자동차를 공동명의자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신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만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바
 - 해당 개정 사항은 '16년 말 개정 후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함에 따라 '19.1.1. 부터 시행됨

i) A(장애인) + B(공동명의자)인 기존 차량을 C에 이전 후 A가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 → 감면○ ii) A(장애인) + B(공동명의자)인 기존 차량을 B에 이전 후 A가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 → 감면×

□ 적용요령

- 이 영 시행('19.1.1.) 후 대체취득 하는 경우 및 종전에 감면 받은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 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제3조 제1항)
- 다만, 이 영 시행 전에 먼저 대체취득한 후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」(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을 적용(부칙 제3조 제2항)
- 또한 '종전의 감면 받은 자동차를 공동명의자외의 자에게 이전'해야 하는 것과 관련
 - 신규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도록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
 - 장애인이 종전의 감면받은 자동차를 공동명의자에게 이전(지분이전)한 경우라도 신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체취득 요건에 부합하게 되는(제3자에게 이전) 경우에는 감면 적용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 일부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